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00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민병덕·김남희·남인순

김병기 · 장철민 · 김재원

김현정 · 이용우 · 황정아

이훈기 • 이병진 • 박주민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본적 보호·감독이 필요한 아동, 노인,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 주를 포함한 보호·양육·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를 방임행위 로 규정하고 있음.

아동·노인·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경우, 반려동물도 생명보호,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 때 반려동물 배설물 쓰레기집이 발견되고 있으며 사람은 시설 등으로 조치되지만 반려동물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.

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3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아동·노인·장애인을 방임(放任)하는 가정에서 생명보호, 안전보 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고 있는 동물

제41조제1항제1호 중 "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"를 "제34조제1항제1호 · 제2호 및 제4호"로 한다.

제42조제1항 중 "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"를 "제34조제1항제1호· 제2호 및 제4호"로 한다.

제43조제2호 중 "제34조제1항제3호"를 "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34조(동물의 구조・보호) ① 시 제34조(동물의 구조・보호) ① --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 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 조에 따라 치료 · 보호에 필요 한 조치(이하 "보호조치"라 한 다)를 하여야 하며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 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. 다 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 · 보호조치의 대상 에서 제외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4. 아동·노인·장애인을 방임 (放任)하는 가정에서 생명보 호,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 이 방치되고 있는 동물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41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시 · 제41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-----도지사와 시장・군수・구청장

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- 1.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, 소유자가 그 동물 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
- 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- 제42조(보호비용의 부담) ① 시· 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 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 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.
  - ②·③ (생 략)
- 제43조(동물의 소유권 취득) 시· 도 및 시·군·구가 동물의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(생략)
  - 2.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 2.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

	,
	1. <u>제34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</u>
	<u>제4호</u>
	2. (현행과 같음)
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	42조(보호비용의 부담) ①
	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
	제4호
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	43조(동물의 소유권 취득)
	1. (현행과 같음)
	이 케어/고케1청/케어> 미 케/중

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	
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	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